

##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

\*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 일
신청인	대표자	한 글 한 자 생년월일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)
	상 호	
	영업소 소재지	(전화번호: )
	자 본 금	
장 비 보 유 현 황		
기 술 자 보 유 현 황		
사무실 보유(면적)		m <sup>2</sup>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5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.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,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.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.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.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(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)	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. 여권정보(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주민등록표등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외국인등록사실증명(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 음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여권(외국인등록)번호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유의사항

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### 처리절차

